제2부
부문별 행정

제4편 복지경제국 _ 제3장 생활보장과

제1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2절 /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제3절 / 찾아가는 희망복지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1. 사업개요

가.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나.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욕구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 지원이다. 이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라.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차등화를 통한 욕구별 맞춤형 급여 지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범위 확대

2)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마.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1)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2)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 및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3)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

(단위 : 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4,488	2,204	1,550	734	

4)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2. 2017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31,802,630	
구분	생계급여	4,911가구	24,637,135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	5,418가구	6,244,663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2,199명	44,558	초중고 교육급여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27명	168,393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정부양곡	26,113가구	498,100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548가구	28,750	수급자, 차상위
	자녀교통비	2,391명	181,031	수급자, 차상위 자녀

나.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시설제외)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 계		소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6,279	8,748	6,050	8,401	229	347
서 1 동	536	735	524	720	12	15
서 2 동	490	682	467	642	23	40
서 3 동	564	787	551	765	13	22
금 사 동	371	521	363	511	8	10
부 곡 1 동	649	878	614	823	35	55
부 곡 2 동	305	429	289	400	16	29
부 곡 3 동	231	312	218	293	13	19
부 곡 4 동	426	562	417	551	9	11
장 전 1 동	254	353	246	343	8	10
장 전 2 동	205	243	197	231	8	12
장 전 3 동	202	266	194	252	8	14
선 두 구 동	105	125	103	123	2	2
청룡노포동	237	352	223	335	14	17
남 산 동	966	1,431	925	1,364	41	67
구 서 1 동	243	354	234	345	9	9
구 서 2 동	465	684	456	670	9	14
금 성 동	30	34	29	33	1	1

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법 제6조)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 급 권 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 의무자	월 1.04%		월 4.17%	

2) 2017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495	844	1,092	1,340	1,588	1,836	2,084
의료급여	661	1,125	1,456	1,786	2,117	2,448	2,778
주거급여	710	1,210	1,565	1,920	2,276	2,631	2.987
교육급여	826	1,407	1,820	2,233	2,646	3,060	3,473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지 원 내 용 〉

구 분	내 용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선정기준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 급여제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급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 급여 차등 지급 -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교육급여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 부교재비(초등학생: 66천원, 중·고등학생: 105천원) ❖ 학용품비(초등학생: 50천원, 중·고등학생: 57천원)
해산급여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600천원(쌍둥이 6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제2절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1.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음.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로무능력자는 본인 희망자에 한해 참여 가능)로서, 근로능력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함.

가. 대상자

자활사업 대상자	=	❶ 조건부 수급자	+	❷ 자활급여 특례자	+	❸ 일반수급자 ❹ 급여특례가구원 ❺ 차상위자 ❻ 시설수급자

– 의무참여 : ❶, 희망참여 : ❷~❻ – 수급자 :❶❷❸ – 참여우선순위 :❶ → ❷ → ❸❹❺❻

나.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및 인건비 지급

1)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기준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우선의뢰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근로	시장진입형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 · 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인턴 ·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 · 군 · 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 ·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2)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 로 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 계	42,210/ 44,210	42,210	38,190	38,190/ 40,190	27,110
급여단가	38,910/ 40,910	38,910	34,890	34,890/ 36,890	23,810
실비	3,300	3,300	3,300	3,300	3,300
표준소득액 (월)	1,011,660	1,011,660	907,140	907,140	619,060
비고	1일 8시간, 주5일				1일5시간, 주5일

다. 2017년도 추진 성과

1) 보건복지부 2017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우수』기관 선정
   ▷ 인센티브 예산 18,000천원 획득
2) 보건복지부 2017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 지역특화사업『장려』기관 선정
   ▷ 인센티브 예산 4,000천원 획득
3) 신규 사업장 3개 발굴로 27명 일자리 창출
4) 자활기금 기금 2회 6,807만원 지원
   ▷ 카페더찬사업단 임차보증금 5,000만원,
   오륜동자활사업장 환경개선 1,807만원
5) 자활 참여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실시
   ▷ 20회 756명
6) 전체 자활참여자 대비 자활성공률 : 37.5% (133명/355명)

라. 2018년도 자활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명/천원)

사업 유형	실시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변동	인원	예 산 액(천원)			비 고
						계	인건비	사업비	
자활기업(4), 자활근로사업단(23), 고용노동부(1) ▶28개사업단					329	2,528,468	2,042,443	486,025	
자활 기업	소계(4개사업단)				19	9,681	9,681	0	
	부산시광역자활센터	희망을만드는교실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	기존	3	0	-	-	
	금정구지역자활센터	카페부산대	디저트카페전문점	기존	2	0	-	-	
		명진클린	전문청소용역	기존	12	0	-	-	
		신규커피자활기업	디저트카페전문점	기존	2	9,681	9,681	-	
시장 진입형	소계(9개사업단)				46	908,140	638,885	269,255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드림셋(버섯) 사업	금융취약계층사업	기존	2	40,140	28,070	12,070	
		드림셋(세탁) 사업	금융취약계층사업	기존	2	40,830	28,760	12,070	
		카페구청	금정구청1층 커피전문점	기존	3	113,230	42,680	70,550	
		카페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카페	기존	3	114,700	42,890	71,810	
		금정북카페	금정도서관1층 커피전문점	상위진입	7	136,580	97,795	38,785	
		119 푸드사업	구내식당 및 커피전문점	기존	2	54,760	27,090	27,670	
		사서도우미	도서관사서도우미	기존	8	112,940	108,860	4,080	
		드림나누미	복지시설 인력파견	기존	10	141,550	136,390	5,160	
		드림택배	정부양곡 택배배송	상위진입	9	153,410	126,350	27,060	
인턴도우미형	소계(2개사업단)				10	108,155	108,055	100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자활도우미	자활센터업무보조	기존	1	13,650	13,550	100	
	구직영	복지업무도우미	사회복지업무보조	기존	9	94,505	94,505	0	
사회 서비 스형	소계(9개사업단)				89	1,230,146	1,022,276	207,870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드림플러스	가내수공업(전자부품조립 등)	기존	7	90,740	86,713	4,027	
		드림울타리	가내수공업(전자부품조립 등)	기존	20	257,080	248,780	8,300	
		다리미	세탁수거배달 전문점	기존	3	69,620	38325	31,295	
		카페더찬	반찬, 샌드위치, 커피 판매	기존	6	159,860	74,354	85,506	
		드림물류	택배포장 업무지원	신규	10	130,730	123,880	6,850	
		드림클린	청소전문사업단	신규	20	296,570	248,360	48,210	
		통일카페	북한음식문화카페	신규	6	61,530	37,848	23,682	
	구직영	수목가꾸기사업(공익형)	수목 및 화훼정리	기존	15	144,689	144,689	0	
		도서관도우미(공익형)	도서관 업무보조	기존	2	19,327	19,327	0	
Gate Way형	소계(1개사업단)				10	102,399	93,599	8,800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Gate-Way	자활참여자 초기과정	기존	10	102,399	93,599	8,800	
근로 유지형	소계(2개사업단)				25	169,947	169,947	0	
	구직영	동복지지원	안부확인 및 동주민센터환경정비	기존	17	115,554	115,554	0	
		시설관리지원	시설환경정비 관리	기존	8	54,393	54,393	0	
취업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존	130	0	-	-	

2. 의료급여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행려환자
2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현황 〉

(2017. 12. 31.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6,791	8,691	5,376	6,163	1,415	2,528
서 1 동	507	641	397	460	110	181
서 2 동	482	633	378	437	104	196
서 3 동	583	747	462	536	121	211
금 사 동	355	468	273	319	82	149
부 곡 1 동	671	913	556	677	115	236
부 곡 2 동	295	377	234	273	61	104
부 곡 3 동	268	331	213	239	55	92
부 곡 4 동	414	520	324	372	90	148
장 전 1 동	231	291	155	175	76	116
장 전 2 동	539	576	507	527	32	49
장 전 3 동	205	266	166	193	39	73
남 산 동	985	1,353	721	842	264	511
구 서 1 동	228	308	175	211	53	97
구 서 2 동	489	639	335	374	154	265
금 성 동	31	34	25	27	6	7
선 두 구 동	111	130	100	116	11	14
청룡노포동	356	423	314	344	42	79
행 려 환 자	41	41	41	41		

나.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1)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견표 〉

<table>
<tr><th colspan="3">의료급여종별 / 의료급여기관</th><th>1종
수급권자</th><th colspan="4">2종
수급권자</th></tr>
<tr><td rowspan="9">외래</td><td rowspan="3">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td><td>원내 직접 조제</td><td>1,500원</td><td colspan="4">1,500원</td></tr>
<tr><td>그 이외의 경우</td><td>1,000원</td><td colspan="4">1,000원</td></tr>
<tr><td>특수장비촬영
(CT, MRI, PET)</td><td>특수장비총액의 5%</td><td colspan="4">특수장비총액의 15%</td></tr>
<tr><td rowspan="3">제2차
의료급여기관</td><td>원내 직접 조제</td><td>2,000원</td><td rowspan="3">만성
질환
자</td><td>1,500원</td><td rowspan="3">만성
질환
자
외</td><td rowspan="3">총진료비의
15%</td></tr>
<tr><td>그 이외의 경우</td><td>1,500원</td><td>1,000원</td></tr>
<tr><td>특수장비촬영
(CT,MRI,PET)</td><td>특수장비총액의 5%</td><td>특수장비총액의 15%</td></tr>
<tr><td rowspan="3">제3차
의료급여기관</td><td>원내 직접 조제</td><td>2,500원</td><td colspan="4" rowspan="3">총 진료비의
15%</td></tr>
<tr><td>그 이외의 경우</td><td>2,000원</td></tr>
<tr><td>특수장비촬영
(CT,MRI,PET)</td><td>특수장비총액의 5%</td></tr>
<tr><td>입원</td><td colspan="2">제1·2·3차 의료급여기관</td><td>무료</td><td colspan="4">총 진료비의 10%
고위험임신부5%,
제왕절개분만 산모 무료</td></tr>
<tr><td rowspan="3">약국</td><td colspan="2">직접조제</td><td>900원</td><td colspan="4">900원</td></tr>
<tr><td colspan="2">처방조제</td><td>500원</td><td colspan="4">500원</td></tr>
<tr><td colspan="2">보건기관 처방조제</td><td>무료</td><td colspan="4">무료</td></tr>
</table>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3절 찾아가는 희망복지

1. 동 복지허브화와 '다복동 사업'

가. 추진배경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틀은 구축되었으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는 복지깔때기 문제 심화로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웠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

나. 추진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6년 2월 맞춤형 복지 권역형 중심동 2개 동(서2동, 남산동)을 설치하여 인근 일반동 5개 동(서1동, 서3동, 금사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을 총괄하는 형태로 동 복지허브화 '다복동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1월 권역형 중심동 3개 동(부곡1동, 장전2동, 구서1동)을 추가 설치하여 인근 일반동 7개 동(부곡2동, 부곡3동, 부곡4동, 장전1동, 장전3동, 금성동, 구서2동)을 총괄하는 형태로 하여 동 복지허브화 '다복동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함.

- 추진 전 -		- 추진 후 -
동 주민센터 ≪ 복지급여 신청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
내방민원 대응 중심	⇒	먼저 찾아가서 실태확인
신청하는 제도 지원		필요한 서비스 종합지원
공적제도 중심 연계		민간자원도 폭넓게 활용

다. 추진내용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부산형 모델인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사업'은 동 중심복지허브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동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여 주민과 지리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하고 사례발굴을

위한 관리사 등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등 먼저 다가서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라. 2017년 추진 실적

구분	세 부 내 용
찾아가는 방문상담	방문 목표제 실시, 방문용 공용차량 구입, 복지박람회 개최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전수조사, 지구대·야쿠르트대리점 업무협약 체결 등
통합사례관리 추진	금정 해피존네트워크 추진, 우수사례집 제작 배부 등
민·관 협력 및 자원 적극 활용	세탁소, 치과, 안과, 베이커리 등 업무협약 체결 통한 지원, 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체결 및 특화사업 추진 등

2. 통합사례관리 사업

가. 사업개요

1) 개념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을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

2) 목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복지제도의 효율성 향상

3)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4)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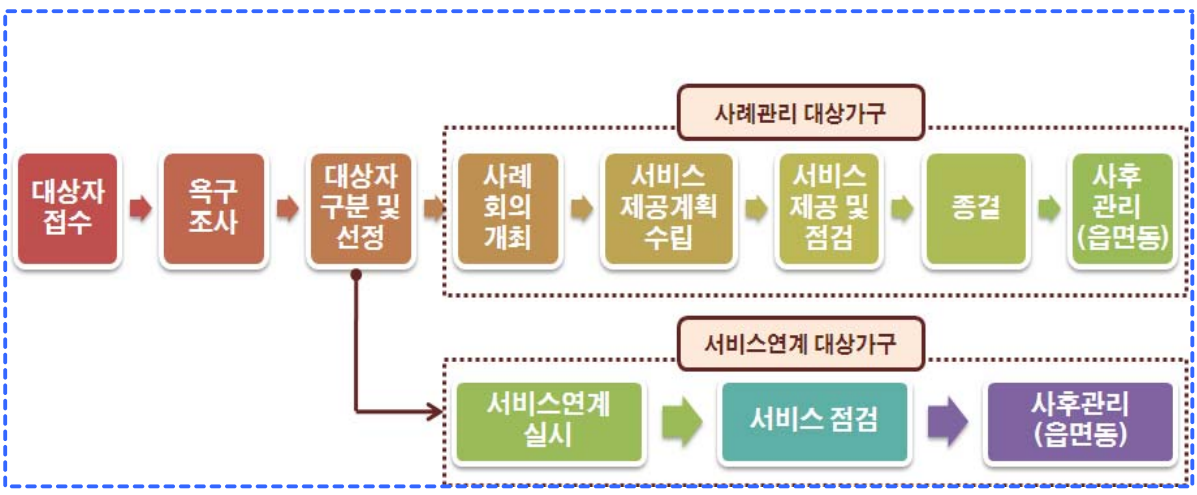

5) 운영체계

○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젼 및 솔루션회의 운영, 동 관리 및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관리

▷ 통합사례관리사 4명 배치 : 통합사례관리 및 이관콜 업무 수행

○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수행

나. 2017년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 : 231건

▷ 신규 : 114건, 종결 : 66건

○ 내부사례회의 : 21회, 금정해피존 네트워크 통합사례회의 : 12회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 사업개요

1)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2) 사업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 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나. 2017년 사업현황 및 실적

1) 사업현황

○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등 11개 사업

2) 예산액 : 1,247,484천원 ▷ 국비 873,240 시비 249,496 구비 124,748천원

3)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치유서비스(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내 나이가 어때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키울 mom난다!, 뇌에 기(氣)가 팍팍!, 내 나이가 어때서(뉴-스포츠와 실버로빅을 통한 낙상예방 및 노인우울증 해소,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4) 이용 및 지원 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2,238건

○ 지원 실적 : 1,194,716천원 ▷ 국비 836,301 시비 238,943 구비 119,471천원

4. 긴급지원제도 실시

가.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나.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다.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1)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2)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5) / 보건복지콜센터(129)

라. 지원기준

1) 재산 : 13,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2)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1,254,079	2,135,323	2,762,363	3,389,402	4,016,441	5,270,519

마. 지원원칙

1)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 지원 우선, 가구단위지원 원칙 등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바.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1) 단기지원원칙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 1개월

○ 연 장 지 원 : 2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 생계 및 연료비 3개월, 의료 및 교육지원 1회, 주거지원 9개월)

2)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3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432~ 6인 1,603	300만원 이내	1인 387~ 6인 848	1인 535~ 6인 1,987	• 초·중·고생 교육비 • 연료비 : 96(동절기10~3월) • 해산비 : 600 • 장제비 : 750 •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3) 2017년 지원 실적

○ 928건 (생계576/의료105/주거15/교육0/연료182/장제0/해산0)

○ 지원금액 : 626,884,650원

5.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현장중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자로 금정「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가. 봉 사 단 : 10개 분야 약 100명(전문가 50명, 자원봉사자 50명)

▷ 한방·내외과 등 의료분야, 시력검진, 이용·미용, 장수사진촬영, 예쁜손가꾸기, 건강체험, 복지상담, 무료급식

나.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

다. 최초구성 : 2000. 6. 11.

라.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마.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회수	2회	2회	1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봉사인원	193명	156명	61명	149명	160명	156명	158명	174명	210명	239명	**234명**
수혜인원	1,943명	1,062명	820명	1,462명	883명	1,856명	1,679명	2,036명	1,942명	2,692명	**2,352명**

6. 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은 종전에는 관 주도로 성금을 모금하고 관리 운영하여 왔으나,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정 공포에 따라 1998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및 공감 유도를 위해 매년 연말연시 희망나눔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금(품) 모금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희망2018 나눔캠페인 모금기간 : 2017. 11. 20. ~ 2018. 1. 31.

나. 희망2018 나눔캠페인 모금실적

(단위 : 천원)

모금목표액	총모금액	성 금			성품
		계	일반성금	지정성금	
275,625	**494,987**	288,103	150,346	137,757	206,884

※ 2017년 모금액 458,315천원